

도금공정 집수조 내부에서 황화수소 중독

재해일자	2016년 8월 13일	재해현황	사망 1명, 부상 4명
작업명	집수조 점검구 설치작업	재해장소	도금공정 집수조 내부

재해 발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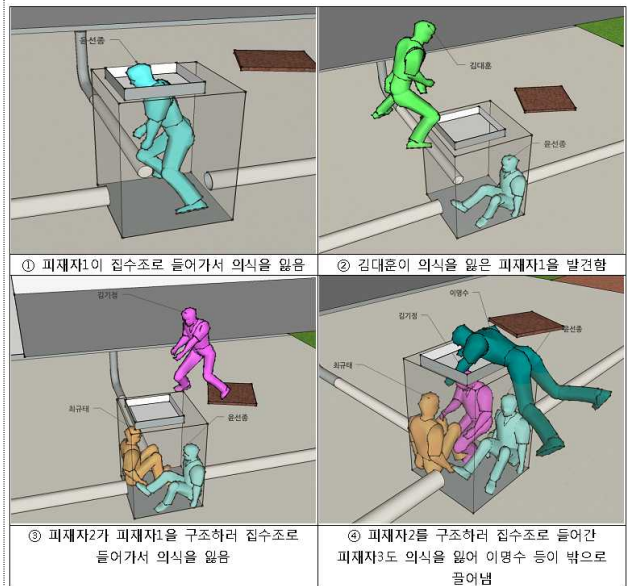
[재해현장 및 방수작업]

2016년 8월 13일 07:40분경 △△(주)창원공장 내 도금공정에 설치된 집수조 점검구 설치공사 중 ○○산업 소속 근로자가 점검구 설치후 상태확인을 위하여 집수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하였고, 구조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 발생 원인

1.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실시
2. 도금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주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가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등의 측정, 환기의 실시 등 안전·보건의 조치 미실시
3. 구출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미지급

[재해발생 모식도]



재해 예방 대책

1. 사업주, 협력업체, 근로자 3자간 질식위험정보 공유 및 안전보건기준 준수
 - 저류조 내부 청소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등의 질식위험 정보 및 안전보건기준을 공유하고 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3. 밀폐공간 작업시 필수 3대 안전수칙 준수
 - ①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 중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 환기 실시
 - ③ 구조작업 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및 긴급구조훈련 주기적 실시

